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887

발의연월일: 2021. 2. 3.

발 의 자:우상호·고영인·김병기

박홍근 · 송영길 · 유정주

이규민ㆍ이용빈ㆍ조승래

한준호 · 홍익표 · 홍정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8년 9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으로 방송통신사무소가 설립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 중 일부는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되었음.

그런데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진흥원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, 방송통신 위원회가 그 소속기관에는 위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.

이러한 입법불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할 수 있도록 개정·시행(2020. 8. 5.)되었음.

이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의 일부를 방송통신위원회의 소속기관의

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, 현행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(안 제103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3조제1항 중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"로, "시·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「전파법」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"을 "그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은"을 "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"으로, "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또는 「전파법」"을 "「전파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안 第103條(權限의 위임・委託) ① | 第103條(權限의 위임・委託) ① -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 ----과학기술정보통신 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---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시 ·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------ 소속 장에게 위임하거나 「전파법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 위임----. 원에 위탁할 수 있다. ② 이 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 ② -----과학기술정보 회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 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 회의 업무는----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의 장 파법 | -----또는 「전파법」에 따른 한국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